



	기 관 의 장
선	
람	

제632호 2022. 4. 13.(수)

조 례
제2821호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
제2822호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7
제2823호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 조례 ···································
제2824호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2825호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826호 홍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827호 홍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18
제2828호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829호 홍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830호 홍천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28
제2831호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832호 홍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833호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2834호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규 칙 제1328호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40
공 고
제2022-766호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47
제2022-773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48
회람

발행: **홍천군 기획감사담당관**

(전화: 033-432-7801, FAX:033-430-2019)

홍천군 조례 제2821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2년 4월 13일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홍천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2. 군 관할 지역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 수 있다.
 - ② 군수는 필요시 예산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 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별 1명 이상으로 한다.
 -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 2. 읍 면장 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홍천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 ④ 위원 구성은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청년 등 다양한 참여 와 연령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⑤ 위원회 참여 신청 및 추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4일 이상 공보나 군 홈페이지 또는 군 본청 및 읍·면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자가 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공개모집 결과 모집 예정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무작위 추첨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 6.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각 분과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담당이 된다.
-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연다.
 - ②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한경우는 제외한다.
- 제1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4.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 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 가를 위원회에 출석 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 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제22조(지역회의 구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회의의 구성은 해당 읍·면의 주민 20명 내외로 하되 공개모집, 추천 등의 방법으로 읍·면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③ 지역회의 구성에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청년 등 다양한 참여와 연령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지역회의는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지역회의 운영) ① 지역회의는 지역위원장 1명, 지역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 ② 지역위원장과 지역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 ③ 지역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 ④ 지역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간사는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⑥ 지역회의는 관할 읍·면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⑦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제22조 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경우 대행하는 기구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예산과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 2.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의제 도출 및 제안사업 발굴
- 3. 제안사업 검토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 4.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
- 5. 그 밖에 지역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 제2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읍·면장은 매년 군의 예산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 를 연다.
 - ② 지역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 제26조(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 ② 민관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③ 회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회장은 주민참여예산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부회장과 협의하여 민관협의회 회의를 연다.

제27조(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제도 개선방안 논의 조정
- 2. 운영계획 수립방향 제시 및 의견 수렴
- 3. 그 밖에 민관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6장 지원 등

- 제28조(예산학교) ① 군수는 위원회 및 지역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 예산에 대한 이해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은 반드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제2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워크숍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 ③ 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홍천군 조례 제2822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2년 4월 13일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 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 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 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 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 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 마. 청년의 생활안정
 -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 사. 청년의 권리보호
 -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 4. 홍천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8조(청년 실태조사 및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생활・교육・문화・여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9조의 홍천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해야 한다.
 - ③ 군수는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홍천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3.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일자리·문화·복지 등 관련 부서장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열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제11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 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 4. 국내 청년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등
 - ③ 협의체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제12조(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홍천군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청년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 4.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5.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 6.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 7. 국내 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 8.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군수는 센터를 직영하거나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
-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4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청년의 범위에 따라 맞춤형 정보제공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5조(청년의 고용촉진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청년의 취업 장려 및 장기근속을 위한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6조(청년의 창업지원 등) 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 안전, 교통, 금융,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8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20조(청년공간의 설치·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공간을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13부터 19조까지의 청년정책 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홍천군 조례 제2823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2년 4월 13일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양수발전사업"이란「전원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揚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의 형태를 말한다.
- 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 3. "자원화"란 관광사업 등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자원화 계획수립)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원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 2. 공공 및 주민복지사업
 -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 4.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 5. 그 밖에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상생노력) 군수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하여 공공기 여 등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심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
 - 1.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부 칙

홍천군 조례 제2824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2년 4월 13일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합방위법」제5조"를 "「통합방위법」 제5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1670부대"를 "제8375부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1670부대"를 "제2839부대 작전과장(을종사태 이상), 육군 제8375부대 2대대 정작과장"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 "제1670부대"를 "제8375부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3항"을 "「통합방위법」제5조제3항"으로 한다.

- 5. 육군 제2839부대장
- 7. 군사안보지원부대 홍천지역 관계관

부 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통합방위법」제5조</u> 및 제9조에 따라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홍천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u>「통합방위법」제5조</u>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육군 제2839부대장</u>
<u>5</u> . 육군 <u>제1670부대</u> 2대대장	<u>6</u> <u>제8375부대</u>
<u><신 설></u>	7. 군사안보지원부대 홍천지역 관계관
<u>6. 제557-5 안보지원대장</u>	<u><삭 제></u>
<u>7</u> . ~ <u>10</u> . (생 략)	8. ~ <u>11</u> . (현행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을 위하여 의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 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작전담당간사 : 홍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을종사태), 육군 <u>제1670부대</u> 2대대 작전 과장(을종사태 이상)	3
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u>제1670부대</u> 2대대 동원과장	4 <u>제8375부대</u>
5. 정보담당간사 : 보안 • 방첩팀장	<u><삭 제></u>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u>법 제5조제3항</u> 에 따라 협의회에서 심의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u>「통합방위법」제5조제3항</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2022. 4. 13.(수)

제632호

조례

홍천군 조례 제2825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2년 4월 13일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위원의 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u> 다만, 결원 등으로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u> <u>다.</u>

홍천군 조례 제2826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2년 4월 13일

홍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 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와 그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봉사회 회원"이란 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3. "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 2. 지역사회 복지 활동 사업
- 3. 사회봉사 활동 사업
- 4.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이바지한 회원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홍천군 조례 제2827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2년 4월 13일

홍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2. "교복"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강원도교육청 등 타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제2호 중 "강원도 외의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중·고등학교로 전학하거나 편입하는 1학년 학생"을 "전학 또는 편입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제3조와 관련한 분담금 외에 추가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홍 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을 감액하거나 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2. 학부모가 직장 등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② 분담금 외에 교복구입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는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u> 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라 한다)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하복과 동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u>말한다.</u>	2. "교복"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금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u><단서 신설></u>	
제5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지역 학교 의 학생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학생의 주민등록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강원도 외의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중고등학교</u> 로 전학하거나 편입하는 1학년 학생	2. 전학 또는 편입하는 학생
제6조(지원 방법) <u>교복구입비는 강원도 홍천교육지원청</u> <u>교육장을 통해 지원한다.</u>	제6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제3조와 관련한 분담금 외에 추가로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홍천교육 지원청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u>경우</u>
	② 분담금 외에 교복구입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는「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

홍천군 조례 제2828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2년 4월 13일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8항"으로 한다.

제2조 중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를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및 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각 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금을 증액 또는 우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1. 학교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보조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 2.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 3. 운동장, 체육관, 정보관, 도서관, 교실 등 학교의 각종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 4. 최근 2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실이 없거나 지원 금액이 타 학교에 비해 현저히 적은 학교
- 5. 군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 6.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제4조제2항 중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서를 매년 8월 20일한"을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서를"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의2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인으로 구성한다." 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5조의2 제2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제1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4 본문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 신청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에게"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u>	제1조(목적) <u>「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8</u>
<u>조 제6항</u> 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u>항</u>
규정」에 따라 홍천군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10 7 (4 7 1 0 0 1 4 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홍천군 관할구역에 있는 <u>고등</u>	
<u>학교 이하 각 급 학교</u>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	
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	
업"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생략)	1.~8.(현행과 같음)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및 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
한다)는 각 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
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제3조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당초예산에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0분의 15 범위에	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0분
서 지원할 수 있다.	의 1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금을 증액 또는 우선하여 교부할
	<u>수 있다.</u>
	1. 학교,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보조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2.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3. 운동장, 체육관, 정보관, 도서관, 교실 등 학교의
	각종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4. 최근 2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실이 없거나
	지원 금액이 타 학교에 비해 현저히 적은 학교
	5. 군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u> </u>

	6.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강원도홍천교육지원 청교육장은 각 급 학교장의 신청서를 제출 받아 신청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서를 매년 8월 20일한 군수에 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제5조(보조금의 심의·결정)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한다) 대상사업 선정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다. 보조금의 지원규모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심의·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1 2 가 나 다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위원은 군의 실·과장 1인, 군 의회 의장이추천하는 군 의원 1인, 교육장이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1인, 민간인(또는 학부모) 3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u>하되,</u>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잔임 기간</u> 으로 한다.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5조의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u>인</u> 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부서의 업무 담당이 된다.	제5조의4(간사) <u>명</u>
제6조(회의) ①~③ (생 략) < <u>신 설></u>	제6조(회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생 략)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할 수 있다. <신 설>	

홍천군 조례 제2829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2년 4월 13일

홍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홍천군 마을 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 2. "교육활동"이란「교육기본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홍천군과 홍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마을주민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 4. "교육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을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 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5. 평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군수는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지원
 - 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 받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 1. 계획 수립의 지원
 -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 5.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 6.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 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역량 강화 지원)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지원)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 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협동조합 지원) 군수는 교육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
 - 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 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
 - 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 5.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내 공간조성사업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성과평가 등) ①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홍천군 조례 제2830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2년 4월 13일

홍천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홍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복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소재한 초·중·고에 재학하는 자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가는 없으나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3.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이란 지역 내에서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 게 교육복지 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교육복지 네트워크"란 민간기관, 학교, 공공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교육복지 주체들이 연계하여 통합적인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방과 후 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진로 및 자원봉사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활동
- 2. 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 3.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복지 사업
- 4.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내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 5. 그 밖에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의 지원 및 사업대상자 자격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 등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때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 및 체험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관련 기과
 - 2.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교육사업 관련 위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관련 기관
 - 3. 관내 소재한 대안교육기관
- 제5조(사업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를 따른다.

- 제6조(사업비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홍천군 조례 제2831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2년 4월 13일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제84조까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홍천군의 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넘을 수 없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관련있"을 "관련 있"으로, "의회의 의원"을 "군의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① 대표위원은 위원으로 선임 된 군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사항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사항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종료되는"을 "종료 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의회의 의원"을 "군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u>제84</u> 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선임방법·운영 등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제84조까지에 따른 결산검</u> <u>사위원</u> <u>관한</u>
<u>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으로 한</u> <u>다.</u>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홍천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 라 한다)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 명을 넘을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생 략)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 는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생 략)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홍천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u>관련있</u> 는 공무 원 및 <u>의회의 의원</u> 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u>관련 있</u> <u>군의</u> <u>원</u>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으로 선임 된 군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표위원이 <u>사고가 있</u> 을 때에는 의회의 의 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u> <u>수 없</u>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 1항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조례 제2537호, 2017.11.10.>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② 「지방공기업법」 <u>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u> 홍천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② <u>제2조에 따라</u> <u>같은 법</u>

결산검사는 <u>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u>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	<u>제35조에 따른</u>
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u>「지방자치법 시행</u> <u>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u> 검사의견서 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 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u>영 제84조제3항의</u> 규정에 따른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생 략)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u>종료되는</u> 날에 일시불 로 지급한다.	② <u>종료 되는</u>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u>의회의 의원</u> 이 아닌 위 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 도 일비를 지급한다.	<u>군의원</u>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 휴일과 <u>제12조의 규정에 의한</u>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② <u>제12조</u> <u>에 따른</u>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u>관하여 필요</u> <u>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u>필요한</u>

홍천군 조례 제2832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2년 4월 13일

홍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적절하고 체계적인 돌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돌봄 아동"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시간 외에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양육, 교육・문화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상담 등 물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4.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군, 법인,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 복지 시설 중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 나.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군이 운영하는 학교 내 시설
 - 다.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시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 대를 없애고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온종일 돌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온종일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사업
-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 4. 온종일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 5. 온종일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사업

- 6. 온종일 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아동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 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 제7조(온종일 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온종일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온종일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7. 그 밖에 군수가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온종일 돌봄 시설 위탁·운영)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회 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온종일 돌봄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이 설립한 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심의ㆍ자문
 - 2. 온종일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 4. 온종일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및 홍천군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보험) 군수는 돌봄시설 운영·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 아동에 필요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홍천군 조례 제2833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2년 4월 13일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운용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의 보장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2.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군이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 이용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양도·대여 금지) ①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 ②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가 분실·멸실·훼손된 경우 지체없이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알려, 교통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다른 시·군 전출, 사망 등)한 경우
-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④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자료요구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 면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바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 1.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

홍천군 조례 제2834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2년 4월 13일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채용 관련 내용을 기재한 공고문을 게시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성 안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치해야 않을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 다.	③ 안 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제8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생 략)	제8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채용 관련 내용을 기재한 공고문을 게시하여 공개모 집 절차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9조(과태료) ① 5 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규칙

홍천군 규칙 제1328호

홍천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허 필 홍2022년4월13일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에 통보해야한다.
-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분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 1. 행정복지 분과위원회
 - 2. 농업경제 분과위원회
 - 3. 건설도시 분과위원회
 - ②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1. 특정 성별의 위원 또는 같은 읍·면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촉장의 교부) 조례 제10조 및 제22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시행규칙 제3조 관련)

성 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남, 여)	
			E-mail		
주소 또는 거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자 택 : 직 장 :				
·단되 단포	휴대전화 :				
직 업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경력					
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기재				

위 본인은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홍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시행규칙 제3조 관련)

성명	(한글)		생년월일	l	(남, 여)	
(영문)			E-mail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자 택 :		직 장 :			
	휴대전화 :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기타단체()					
추천단체	기관·단체명					
	비영리민간단체명					
	기타단체명					
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	제1희망		망		제3희망	
	① 행정복지 ② 농업경제 ③ 건설도시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기재					

위 사람을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 . . .

○○읍·면장 - 직인

○○단체장 -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시행규칙 제5조 관련)

제 호

위 촉 장

- 성 명:
- 생년월일:

귀하를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인)

[별지 제4호서식](시행규칙 제5조 관련)

제 호

위 촉 장

○ 성 명:

○ 생년월일:

귀하를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장 (인)

제632호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2-607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기허가 및 기준공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2년4월11일홍천군수

1. 사업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공고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165 외 2

3. 도로길이 : 377.4m 4. 도로너비 : 6.0m 5. 도로면적 : 1,999㎡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소유자	비고	
		시국	공부면적	지정면적	<u> </u>	
북방면 북방리	165	답	2,331	434	최○규	
	175	목	12,466	1,285	이○순	
	178		2,364	280	신○하	

(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축 척 <임의> 위치도 175목 인근허기선형 174목 [] 1/600, [] 1/1,200 축 척 현황도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2-766호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카메 라) 설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1일

홍 천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위험지역의 보행자 안전확보 및 교통사 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2-773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 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 2022년 4월 12일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서석면 어론리 802번지

5. 도로길이 : 약10m
 6. 도로더러 : 약39㎡
 7. 도로면적 : 약39㎡
 8.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비고
조세시	시킨	시크	공부면적	공부면적 지정면적	꾸규지	912
서석면 어론리	802	전	2,176	39	허○춘	

